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6. 9 선고 2019나3597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

담당변호사 이용훈

변론 종결 2020. 5. 19.

판결 선고 2020. 6. 9.

제 1 심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8가소41376 판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5. 3. 31. C조합(이하 '이 사건 C'이라 한다)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, 현재 이 사건 C의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C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4. 12. 15. 이 사건 C의 이사이던 피고의 계좌로 2,000만 원을 송금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2. 원고의 주장

원고가 이 사건 C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, 이 사건 C의 이사이던 피고가 조합에 출자할 2,000만 원을 피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하여 위와 같이 2,000만 원을 송금하였다.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.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가 송금한 위 2,0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2,000만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.

### 3. 판단

민법 제741조는 "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."라고 정하고 있다.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.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, 취소,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하고,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·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).

이 사건의 경우, 원고가 2014. 12. 15. 피고의 계좌로 2,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

같으나, 갑 제3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, ① 원고는 ① 피고와 함께 이 사건 C의 창립총회에 참석하는 등 이 사건 C의 설립 당시부터 관여하였고, 나 이 사건 C의 이사장을 맡은 이후부터 이 사건 C의 계좌를 관리하였으며, 2015. 4. 7. 피고의 계좌로 원고의 출자금 명목으로 2,000만 원(기초사실에서 언급된 2,000만 원과 별개의 돈이다)을 송금하였다가 잘못 송금한 것임을 알게 되어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를 반환받은 후 즉시 이 사건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이 사건 C의 출자금은 이 사건 C의 계좌로 관리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② 원고가 2015. 4. 7. 피고의 계좌에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2,000만 원은 피고로부터 반환받았으면서도 2014. 12. 15.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는 2,000만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, ③ 피고는 2014. 12. 15. 원고로부터 2,000만 원을 송금받은 경위와 그 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 밝히고 있고,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, 갑 제1 내지 3호증,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C의 출자금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고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C의 출자금으로 피고의 계좌로 2,0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문성, 판사 조우연, 판사 이재석